

# **2013년도 임금협약서**

**2013.**

## 2013년도 임금협약서

### 전      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로 조합 활동의 제반 여건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조건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공공·연구기관의 올바른 위상 확립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제1조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우선하며, 조합원과 맷은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한다.  
② 단체협약과 이 협약의 각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종사하는 모든 정규직·계약직원에게 적용된다.

- 제3조 (임금의 원칙) ① 진흥원은 임금 및 임금과 관련된 모든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의 임금을 종전보다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4조 (임금의 정의) 이 협약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다만 연 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은 그 총액을 월할 계산

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제5조 (적용기간)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6조 (임금인상) 진흥원은 임금을 2012년도 총인건비 대비 2.8% 이내에서 인상하고 세부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 ① 기본연봉은 위 인상분에 대해 직급별 평균금액으로 정액 인상하며, 간부직(G1급)에 대해서는 2012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와 최저등급간 ±1% 내에서 등급별 균등비율로 차등 인상한다.
- ② 성과연봉은 비누적식으로 2012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 한다. 단, 계약직에 대해서는 2014년도 임금협약부터 적용한다.

구분	S	A	B	C	D
성과 연봉 차등율	G1	+41%	+10%	0%	-19%
	G2	+16%	+4%	0%	-8%
	G3	+12%	+3%	0%	-6%
	G4a/b	+10%	+2%	0%	-5%

③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 시간외 근무수당 :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로 별도시간을 보상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연차휴가 보상수당 : 미사용 2일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총액임금 한도 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2013년도 지급금 규모는 1인당 연15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당해연도 집행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2014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지급금 규모는 1인당 90만원을 기본으로 정하고 2014년도 집행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진흥원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 ① 제 세금 및 법령에 정한 사항
- ② 노동조합비
- ③ 사우회 회비
- ④ 노동조합에서 결의된 사항
- 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공제액

- ⑥ 사용자에게 대부 받은 원금 및 이자
- ⑦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8조 (직무급) ① 진흥원은 조합원의 상대적 직무 난이도 및 업무량, 업무 환경 등을 검토하여 직무급을 지급한다.

② 본사 근무자를 위한 직무급은 지방 이전 시점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 운영 방안은 재협의한다.

③ ‘총인건비 인상율’ 한도 내에서 본사 근무자의 직무급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액을 조정한다.

④ 직무급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본사 근무자(월 지급액)

구분	직무그룹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직무	본사 내 본부, 실, 업무 총괄	본사 내 팀 (센터 사무국 검사역) 총괄	본사 내 TFT겸직	본사 내 사업/관리 수행
금액	70만원	50만원	15만원	10만원

- 지사 근무자(월 지급액)

구분	직무그룹		
	그룹 5	그룹 6	그룹 7
직무	지사 내 본부, 실, 업무 총괄	지사 내 팀 (센터 사무국 검사역) 총괄	지사 내 TFT 겸직
금액	60만원	40만원	5만원

##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이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제2조 (협약의 해석과 효력) ① 이 협약의 해석을 위하여 회의록을 두며, 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② 이 협약 이전에 기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중복 되는 부분은 이 협약을 적용하며, 이 협약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해당 지부에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부와 체결한 협약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6조(임금 인상)을 제외한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4조 (협약의 보관)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5조 (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제반 노동 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위의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3. 12. 20

한국콘텐츠진흥원

원 장

홍상표

(서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성우

(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부장

김형민

(서명)